

1. 개정이유

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,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에서 학력과 근무경력 간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항하는 항공기 및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를 추가하고, 「기상법」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(안 제17조의3)
- 나. 기상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을 학력을 갖춘 후의 실무경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(안 별표 1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입법예고 전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7조의3제1호 중 “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”을 “사유(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)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”을 “공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항공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른”을 “「항공안전법」 제36조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

가. 「항공안전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

나.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항공기 사용사업

자

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
이상의 교육기관

별표 1 제1호라목 중 “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”를 “석사 학위를 취득
한 후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”를 “학사 학
위를 취득한 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
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
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
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 규칙 시
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
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의3(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) <u>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면제받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제17조의3(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) <u>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
1. 기상악화, 천재·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	1. ----- ----- <u>사유(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는 제외한다)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-----</u> --
2. <u>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</u>	2. <u>공용</u> ----- -----
3. 「 <u>항공법</u> 」 제27조제4항에 <u>따른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</u> <u><신 설></u>	3. 「 <u>항공안전법</u> 」 제36조제3항에 <u>따라 -----</u> 3의2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 훈련을 하는 항공기</u> 가. 「 <u>항공안전법</u> 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

4. (생략)	<u>나. 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,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</u> <u>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</u> 4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